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70호 2024. 6. 26.(수)

거창햇살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81호 거창군계획시설(소로 2-296, 3-26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24-82호 사물주소폐지 고시 ····· 5
거창군 고시 제2024-84호 도로명주소 고시 ····· 6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930호 상마소하천 정비공사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 취소 공고 ····· 7
거창군 공고 제2024-93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의로(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 8
거창군 공고 제2024-945호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0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거창군 고시 제2024-81호

거창군계획시설(소로 2-296, 3-26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교통시설	소로	2	296	9	국지도로	121	소로 2-294	소로 3-263	일반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22-58호 (2022. 5. 18.)	
	소로	3	263	8	국지도로	155	소로 1-75	거창 가지 353-2	일반도로	-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 (1978.3.20)	

2. 거창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의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사업기간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m)		
교통시설: 도로	가지2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거창	가지	소로	2	296	120	9	일부 시행 (B=9m, L=161m)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소로	3	263	41	9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군계획시설(소로 2-296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거창읍 가지리	353-5	학	2	2	학교법인 거*** ****	-				
2	거창읍 가지리	356-18	전	3	3	주식회사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3	거창읍 가지리	356-19	전	81	81	주식회사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4	거창읍 가지리	353-6	학	24	24	학교법인 거*** ****	-				
5	거창읍 가지리	353-7	학	13	13	학교법인 거*** ****	-				
6	거창읍 가지리	산94-9	임	732	73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7	거창읍 가지리	339-5	학	19	19	학교법인 덕***	-				
8	거창읍 가지리	339-6	학	57	57	학교법인 덕***	-				
9	거창읍 가지리	353-8	학	117	117	주식회사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0	거창읍 가지리	339-7	학	3	3	학교법인 덕***	-				
11	거창읍 가지리	1719-13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국				
12	거창읍 가지리	347-8	학	2	1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합 계				1,084	1,083						

나. 군계획시설(소로3-263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거창읍 가지리	347-8	학	2	1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2	거창읍 가지리	347-9	도	44	44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3	거창읍 가지리	346-4	학	2	2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4	거창읍 가지리	341-2	도	53	51	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5길 52-16				
5	거창읍 가지리	341-7	대	116	116	학교법인 거*** ****	거창읍 가지리 353-1				
6	거창읍 가지리	318-6	도	1,208	77	거창군	공				
7	거창읍 가지리	1719-14	도	264	74	국 (국토교통부)	국				
8	거창읍 가지리	339-2	학	173	6	학교법인 덕***	-				
합 계				1,862	371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준공 후 해당 관리청에 귀속

5.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4-82호

사물주소 폐지 고시

우체통에 부여한 사물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24조(사물주소),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 6. 24.

거 창 군 수

○ 사물주소 폐지 주소 : 거창읍 죽전4길 37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거창읍 죽전4길 37	2024.7.1.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우체통 철거 · 폐기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055-94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물주소

-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시설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차장 등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치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거창군 고시 제2024 - 8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26.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웅길 89-31 등 2개소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항재들길 87-1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4 - 930호

「상마소하천 정비공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취소 공고

□ 취소공고명 :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취소공고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3-1683호(2023. 11. 17.)

□ 취 소 사 유 : 수용재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 공고 취소 후 실정에 맞게 재공고

위와 같이 공고를 취소합니다.

2024. 6. 20.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4-93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년 5월 27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 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
3. 사업장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3번지 일원
4. 사 업 내 용 : 부지조성 A=46,256㎡
5. 공 고 기 간 : 2024. 6. 26. ~ 2024. 7. 15. 까지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6.

거 창 군 수

붙임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및 사업현황**

1 거창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 공시송달 대상(토지) - 소유자, 관계인

연번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거창군 거창읍)	지번	토지 지목 / 물건 종류		면적(㎡) / 수량		성 명	주 소 (현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공부	현황	공부	편입					
1	상림리	산22	임야	임야	99	99	**미등기1**		**이원종무1**		임야대장 상 소유자
2	상림리	산23	임야	임야	298	298	**미등기2**		**이원종무2**		임야대장 상 소유자

○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장 위치	비고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거창군수 (도시건축과장)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공고 제2024-945호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2. 개정이유 :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 정비 등 현행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조·제2조의2)

- 현 행 : 적용범위
- 변 경 : 다른 규칙과의 관계, 환지 청산금 취급자

❍ 법령개정 사항, 용어 등 정비함(안 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14조, 별지 제2호~제5호서식)

1) 가산금 부과근거 : 「지방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2) 용어 : 일로부터 ⇒ 로부터, 납부기일 ⇒ 납부기한, 금회 ⇒ 이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일부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4. 06. 25.(화) ~ 2024. 07. 15.(월)

6.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0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건설교통과)
- 전화 : 055-940-3541, 팩스 : 055-940-35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 환지청산금”을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 징수 교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환지 청산금 취급자) 군수는 청산금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두되, 취급자는 읍·면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보관”을 “현금을 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송부”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일로부터”를 “통지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6조 중 “금융기관”을 “취급자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제4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산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회”를 “이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해야 한다.

제14조 중 “환지 청산금”을 “청산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읍면장이 되며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 징수 교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환지 청산금 취급자)** 군수는 청산금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두되, 취급자는 읍·면장으로 한다.
제3조(현금보관)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 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 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현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서)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	**제5조(납부통지서)**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

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산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

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단** 환지 부지정 대상자에게 우선지급한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은 후 교부대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	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이번**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지 부지정 대상자에게 우선지급한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의 발급증을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해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납부 통지서

납부 의무자	주소				제 호
	성명		**성별**	**남/여**	
사업 지구					
청산 구분	환지 청산 징수금				
납부 금액	금				원정
징수금 명세	종전 토지권리가격	환지 평정가격	징수 결정액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한~~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인

~~○○읍·면장 인~~

[별지 제3호서식]

<table>
<tr><td colspan="2">영 수 증</td></tr>
<tr><td>제 호</td><td>읍(면) ○ ○ ○ 귀하
납</td></tr>
<tr><td>사업지구</td><td>○○ 지구경지정리사업</td></tr>
<tr><td>내 역</td><td>환지 청산 징수금</td></tr>
<tr><td>영수금액</td><td>금 원정</td></tr>
<tr><td colspan="2">영수일자 20 년 월 일

위의 환지 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취급자 ㊞

거창군수 인</td></tr>
<tr><td>영 수 자</td><td></td></tr>
<tr><td></td><td></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d colspan="5">교 부 통 지 서</td></tr>
<tr><td rowspan="2">수령인</td><td>주 소</td><td colspan="2"></td><td rowspan="2">제 호</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사업 지구</td><td colspan="4">○ ○ 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td></tr>
<tr><td>청산 구분</td><td colspan="4">환지 청산 징수금</td></tr>
<tr><td>교부금액</td><td colspan="4">금
원정</td></tr>
<tr><td rowspan="2">교부금
명세</td><td>종전토지권리가격</td><td>환 지 평 정 가 격</td><td colspan="2">징 수 결 정 액</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교부예정일</td><td colspan="4">~~차~~
차 ( )일간</td></tr>
<tr><td>교부장소</td><td colspan="4"></td></tr>
</table>

위 금액은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인

~~○ ○ 읍·면 장~~ ㊞

[별지 제5호서식]

<table>
<tr><td colspan="4">독 촉 장</td></tr>
<tr><td>제 호</td><td>납입통지번호</td><td colspan="2">제 호</td></tr>
<tr><td>환지 청산 징수금</td><td colspan="3">금 원정</td></tr>
<tr><td rowspan="3">징수금 내역</td><td>징수결정액</td><td colspan="2"></td></tr>
<tr><td>가산금</td><td colspan="2"></td></tr>
<tr><td>합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 청산금 취급자에 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자
거창군수 인

~~○ ○ 읍·면 장~~ ㊞
주소 :
성명 : 귀하</td></tr>
</table>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

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18.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